

# 투자설명서 변경 내용

□ 대상펀드명 : 트러스톤아시아장기성장주40증권자투자신탁[채권혼합]

□ 정정 사유 : ① 모투자신탁의 투자대상자산 및 투자전략 추가

② 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

③ 반기 기준으로 갱신

④ 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·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반영

□ 효력 발생일 : 2024. 8. 7.

□ 정정 내용

| 항 목 | 정정 사유 | 정 정 전 | 정 정 후 |
|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
|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

##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

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 |
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|
|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| 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·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반영 | 7.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 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<u>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</u> ,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<u>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.</u> | 7.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 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<u>보호되지</u> 않으며,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<u>보호되지</u> 않습니다. |
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|

## 요약정보

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|
| -           | 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·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반영  | 집합투자증권은 「예금자보호법」에 따라 <u>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</u> 실적배당 상품이며, (생략) | 집합투자증권은 「예금자보호법」에 따라 <u>보호되지 않는</u> 실적배당상품이며, (생략)   |
| 투자비용        | 동종유형 총보수 최근 기준으로 기재<br>반기 기준으로 갱신 | -   | <u>2024. 6. 28. 기준</u><br><br><u>2024. 4. 25. 기준</u> |
| 투자실적추이(연평균) | 반기 기준으로 갱신                        | -   | <u>2024. 4. 25. 기준</u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

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|
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|
| 수익률)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|
| 운용전문인력   | 최근 기준으로 기재                       | -   | <u>2024. 6. 30. 기준</u>  |
| 투자자 유의사항 | 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·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반영 | 집합투자증권은 「예금자보호법」에 따라 <u>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 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u>  | 집합투자증권은 「예금자보호법」에 따라 <u>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u>   |
| 주요투자위험   | 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·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반영 | 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: 이 투자신탁은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합니다. (생략) 또한 이 투자신탁은 은행 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<u>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</u> ,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<u>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.</u> | 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: 이 투자신탁은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합니다. (생략) 또한 이 투자신탁은 은행 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<u>보호되지 않으며</u> ,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<u>보호되지 않습니다.</u> |

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

|               |         |  |   |
|---------------|---------|--|---|
| 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| 연혁 업데이트 | [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연혁]<br>- 트러스톤중장기증권모투자신탁[채권]<br><신설> | [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연혁]<br>- 트러스톤중장기증권모투자신탁[채권]<br><u>2024.08.07</u><br><u>투자대상자산 추가(단기사채)</u> |
|---------------|---------|--|---|

|  |  |   |  |
|--|--|---|--|
|  |  | - 트러스톤중기채권증권모<br>투자신탁[채권]<br><신 설>  | - 트러스톤중기채권증권모<br>투자신탁[채권]<br><u>2023.06.23</u><br>- 자투자신탁 추가(트러스<br>톤 중기채권 증권자투자신<br>탁[채권])<br><u>2024.08.07</u><br>- 환매일정 변경 : 2(3)영<br>업일 기준가로 4(4)영업일<br>에 지급 → 3(4)영업일 기<br>준가로 3(4)영업일에 지급<br>- 투자대상자산 추가(단기<br>사채, 기업어음증권) |
| 5. 운용전문인력<br>가. 운용전문인력                 | 최근 기준으로 기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-   | <u>2024. 6. 30. 기준</u>   |
| 5. 운용전문인력<br>나. 운용중인 집합투자<br>기구에 관한 사항 | 최근 기준으로 기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-   | <u>2024. 6. 30. 기준</u>   |
| 5. 운용전문인력<br>다. 운용전문인력 최근<br>변경 내역     | 최근 3년 경과 내역 삭<br>제                     | [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<br>모투자신탁의 운용전문인력<br>최근 변경 내역]<br>- 트러스톤중기채권증권모<br>투자신탁[채권]<br><u>책임운용역 : 신홍섭</u><br><u>(2020.01.09~</u><br><u>2020.07.21)</u> | [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<br>모투자신탁의 운용전문인력<br>최근 변경 내역]<br>- 트러스톤중기채권증권모<br>투자신탁[채권]<br><u>&lt;삭 제&gt;</u>   |
| 8. 집합투자기구의 투<br>자대상<br>가. 투자대상         | 모투자신탁의 투자대상<br>자산 추가(단기채권) 및<br>기재 명확화 | [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<br>모투자신탁의 주요 투자<br>대상]<br>- 트러스톤 중장기 증권<br>모투자신탁[채권]<br>1) 채권 : 사채권(신용평<br>가등급 A-이상, 사모사채<br>권,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<br>발행되는 사채, 주택저당채 | [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<br>모투자신탁의 주요 투자<br>대상]<br>- 트러스톤 중장기 증권<br>모투자신탁[채권]<br>1) 채권 : 사채권(취득시<br>신용평가등급 A-이상) <u>전자<br/>증권법 제 59 조에 따른 단<br/>기사채의 경우 취득시 신</u>   |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|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|---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)   | <b>용평가등급 A2 이상</b> , 사모사채권,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,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)   |
| 환매조건부 매수 삭제 및 번호 정정              | 7) <u>환매조건부 매수</u><br>8) (생략)<br>9) (생략)<br>10) (생략)  |   | <b>&lt;삭제&gt;</b><br>7) (현행과 같음)<br>8) (현행과 같음)<br>9) (현행과 같음)  |
| 환매조건부 매수 추가 및 번호 정정              | 11) (생략)<br><신설>  |   | <b>10) (현행과 같음)</b><br><b>▶ 환매조건부 매수</b>  |
| 번호 정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2) (생략)  |   | <b>11) (현행과 같음)</b>   |
| 기재 정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나)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위의 4)~9)의 투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부터 3개월까지(생략)  | 나)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위의 4)~8)의 투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부터 3개월까지(생략)  | 나)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위의 4)~8)의 투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부터 3개월까지(생략)  |
| 모투자신탁의 투자대상 자산 추가(단기채권) 및 기재 명확화 | - 트러스톤 중기채권 증권<br>모투자신탁[채권]<br>1) 채권 : 사채권(신용평가등급 A-이상, 사모사채권,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, 주택저당채권 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) | - 트러스톤 중기채권 증권<br>모투자신탁[채권]<br>1) 채권 : 사채권( <b>취득시</b> 신용평가등급 A-이상( <b>전자증권법 제 59 조에 따른 단기사채의 경우 취득시 신용평가등급 A2 이상</b> ), 사모사채권,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,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) | - 트러스톤 중기채권 증권<br>모투자신탁[채권]<br>1) 채권 : 사채권( <b>취득시</b> 신용평가등급 A-이상( <b>전자증권법 제 59 조에 따른 단기사채의 경우 취득시 신용평가등급 A2 이상</b> ), 사모사채권,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,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) |
| 모투자신탁의 투자대상 자산 추가(기업어음증권)        | 3) <u>양도성예금증서</u><br><신설>   |   | 3) <b>어음</b><br><b>▶ 기업어음증권(신용평가등급 A2 이상, 기업이 사업에</b>   |

|   |   |   |  |
|---|---|---|--|
|   | <p>환매조건부 매수 삭제 및 번호 정정</p> <p>환매조건부 매수 추가 및 번호 정정</p> <p>번호 정정</p> <p>기재 정정</p> | <p>7) <u>환매조건부 매수</u></p> <p>8) (생략)</p> <p>9) (생략)</p> <p>10) (생략)</p> <p>11) (생략)</p> <p>&lt;신설&gt;</p> <p>12) (생략)</p> <p>나)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위의 4)~9)의 투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부터 3개월까지(생략)</p> | <p><u>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한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 제 4 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</u></p> <p>▶ <u>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(신용평가등급 A2 이상)</u></p> <p>▶ <u>양도성 예금증서</u></p> <p>&lt;삭제&gt;</p> <p>7) (현행과 같음)</p> <p>8) (현행과 같음)</p> <p>9) (현행과 같음)</p> <p>10) (현행과 같음)</p> <p>▶ <u>환매조건부 매수</u></p> <p>11) (생략)</p> <p>나)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위의 4)~8)의 투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부터 3개월까지(생략)</p> |
| <p>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</p> <p>나. 투자제한</p>                     | 기재 정정   | <p>- <u>트러스트중장기증권모투자신탁[채권], 트러스트중기채권증권모투자신탁[채권]</u></p> <p>1)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:<br/>- <u>제 17 조 제 2 항 제 1 호</u>에 따른 단기 대출</p>  | <p>- <u>트러스트중장기증권모투자신탁[채권], 트러스트중기채권증권모투자신탁[채권]</u></p> <p>1)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:<br/>- <u>법 제 83 조제 4 항</u>에 따른 단기 대출</p>  |
| <p>9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, 투자방침 및 수익구조</p> <p>가.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</p> | <p>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 추가</p>   | <p>1) 투자전략<br/>[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]<br/><input type="checkbox"/> 채권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</p>   | <p>1) 투자전략<br/>[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]<br/><input type="checkbox"/> 채권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</p>  |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p>트러스트중기채권증권모투자신탁[채권]/트러스트중장기증권모투자신탁[채권]</p> <p>〈신 설〉</p>  | <p>트러스트중기채권증권모투자신탁[채권]/트러스트중장기증권모투자신탁[채권]</p> <p><b>(3) 크레딧 전략</b></p>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번호 정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(3) (생 략)   | (4) (현행과 같음)  |
| 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             | 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·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반영 | <p>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. (생 략) 또한,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<u>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</u> 않습니다. (생 략)</p>   | <p>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. (생 략) 또한,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<u>보호되지</u> 않습니다. (생 략)</p>   |
| 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<br>가. 일반위험   | 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·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반영 | <p>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: 이 투자신탁은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고,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. 또한 실적배당상품으로 은행 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<u>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</u> 않습니다.</p> | <p>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: 이 투자신탁은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고,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. 또한 실적배당상품으로 은행 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<u>보호되지</u> 않습니다.</p> |
| 11. 매입, 환매, 전환 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| 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                   | <p>1) 환매방법 및 절차, 환매신청 가능시간</p> <p>〈신 설〉</p>   | <p>1) 환매방법 및 절차, 환매신청 가능시간</p> <p><b>〈환매 가능 여부 및 환매수수료 부과 여부〉</b></p>   |
| 13. 보수 및 수수료에                 | 동종유형 총보수 최근                      | -   | <b>2024. 6. 28. 기준</b>  |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 |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|--|
| 관한 사항<br>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| 기준으로 기재 |  |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|--|

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

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|
| 1. 재무정보           | 반기 기준으로 갱신 | - | <u>2024. 4. 25. 기준</u> |
| 2.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| 반기 기준으로 갱신 | - | <u>2024. 4. 25. 기준</u> |
| 3.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  | 반기 기준으로 갱신 | - | <u>2024. 4. 25. 기준</u> |

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|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|--|
| 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<br>가. 회사 개요   | 최근 기준으로 기재<br>회사연혁 추가 | -<br><신 설>   | <u>2024. 6. 30. 기준</u><br><u>2022.11 종합자산운용사 전환</u>  |
| 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<br>라. 운용자산 규모 | 최근 기준으로 기재            | -  | <u>2024. 6. 30. 기준</u>   |
| 3. 집합투자재산 관리 회사에 관한 사항(신탁업자)   | 신탁업자 정보 업데이트          | 주소 및 연락처 : <u>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55 (02-2002-1111)</u><br>연혁 : <신 설> | 주소 및 연락처 : <u>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5(을지로 1가) (1599-1111)</u><br>연혁 : <u>1971년 6월 설립, 2015년 9월 외환은행 합병</u> |